

감정평가서

의뢰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희상
건명	이혜련 외 4명 소유물건(2024타경118283)
감정서번호	cm241002-1-058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동산)감정평가표

페이지 : 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항 목 선

감정평가액	이십일억구천이백사십만원정 (₩2,192,400,000.-)					
의뢰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희상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8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혜련 외 4명 (2024타경118283)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 록 표 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10.14	2024.10.14 ~ 2024.10.14	2024. 10. 24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519 이	토지	519 하 여	- 백	2,192,400,000
	합 계					₩2,192,4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소재 “상월곡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경매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실무기준」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및 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나. 감정평가조건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기간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4년 10월 14일 기준시점으로 평가하였으며, 본건의 실지조사는 2024.10.14 실시하였음.

5. 그 밖의 사항

- (1) 기호2 및 기호4는 지목이 “대” 이나 현황 “도로” 이며, 기호3은 지목 및 현황이 “도로”로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2) 본건의 위치는 지적공부 및 개략적 목측으로 확인하였는바, 정확한 경계 및 위치의 확인은 측량이 필요한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2.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을 근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고,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동 규칙 제12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1) 공시지가기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2)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1. 대상토지 개요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지역	면적 (㎡)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1	석관동	338-176	잡종지	2종일주	178	잡종지	세로불	사다리 평지
2	석관동	338-507	대	2종일주	225	도로	-	-
3	석관동	338-509	도로	2종일주	76	도로	-	-
4	석관동	338-514	대	2종일주	40	도로	-	-

2. 공시지가기준법

(1) 비교표준지의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를 선정함.

(공시기준일: 2024.01.01)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석관동 338-515	대	105	단독 주택	2종 일주	세로 (불)	정방형 평지	2,720,000	-
B	석관동 338-504	대	221	단독 주택	2종 일주	세로 (가)	세장형 평지	3,127,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시점수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거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4.01.01 ~ 2024.09.30	1.656	2024년 09월 누계
2024.09.01 ~ 2024.09.30	0.206	2024년 09월
2024.01.01 ~ 2024.10.14	1.754 (1.01754)	$(1 + 0.01656) * (1 + 0.00206 * 14/30)$

※ 2024년 10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인바, 2024년 08월 지가변동률을 연장적용함.

(3)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 건	항 목	세항목
가 로 조 건	가로의 구조 및 상태	폭, 보도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 근 조 건	인근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교통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대중교통의 유형과 노선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 경 조 건	자연환경	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등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기반시설(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 지 조 건	규모, 형상 등	면적
		접면 너비 및 깊이
		형상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토양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행정적 조 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개별요인 비교치

기호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	A	1.00	1.00	1.00	0.98	1.00	1.00	0.98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함.						
2	B	1.00	1.00	1.00	0.33	1.00	1.00	0.33
		획지조건(이용상황 등)에서 열세함.						
3	A	1.00	1.02	1.00	0.33	1.00	1.00	0.34
		접근조건(접근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이용상황 등)에서 열세함.						
4	A	1.00	1.00	1.00	0.33	1.00	1.00	0.33
		획지조건(이용상황 등)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2004.05.14. 선고)], [2002두5054(2003.07.25. 선고)],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 지역의 평가선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 산식 >

			기준시점의 비교사례를 기준한 비교표준지 가격
격차율	=	-----	
		-	
		기준시점의 비교표준지 가격	
		사례가격×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	
	=	-----	
		-	
		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인근 유사물건의 거래사례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토지	면적 (㎡)	용도 지역	거래가액(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건물			토지단가(원/㎡)		
a	상월곡동 2*-***	대	418	2종 일주	4,235,000,000	2023.01.11	1991.08.28
		건물	438.22		10,131,580		
- 토지배분단가(거래 후 건물 멸실된바, 토지만의 거래로 판단됨) $4,235,000,000 / 418 \approx 10,131,580 \text{원/㎡}$							

3) 인근지역 평가사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토지단가 (원/㎡)	평가 목적	기준시점
b	석관동 3*-***	대	168	2종일주	8,020,000	담보	2024.07.16
c	상월곡동 2*-***	대	109	2종일주	9,820,000	조세	2023.05.12
d	석관동 3*-***	도로	13	2종일주	2,470,000	경매	2021.05.1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① 비교사례의 선정

인근지역 내 사례로 표준지와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b,c>를 선정함.

② 기준시점의 비교사례 기준한 비교표준지 가격

표준지	사례	사례단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A	b	8,020,000	1.00630	1.00	0.90	7,263,473
B	c	9,820,000	1.02650	1.00	0.86	8,668,998

- 시점수정치(서울특별시 성북구 주거지역의 지가변동률 적용함)

2024.07.16 ~ 2024.10.14 : 1.00630(0.630%)

2023.05.12 ~ 2024.10.14 : 1.02650(2.650%)

- 지역요인비교: 대등함.(1.00)

- 개별요인비교

표준지	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A	b	0.90	1.00	1.00	1.00	1.00	1.00	0.90
		가로조건(가로의 폭, 계통 및 연속성 등)에서 열세함.						
B	c	0.95	0.95	0.95	1.00	1.00	1.00	0.86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및 접근조건(교통 및 상가와의 접근성 등), 환경조건(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③ 기준시점의 비교표준지 가격

표준지	공시지가(원/㎡)	시점수정	산정단가(원/㎡)
A	2,720,000	1.01754	2,767,709
B	3,127,000	1.01754	3,181,848

④ 격차율 산정

표준지	사례	사례기준 비교표준지 가격	기준시점의 비교표준지 가격	격차율
A	b	7,263,473	2,767,709	2.624
B	c	8,668,998	3,181,848	2.725

⑤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의 산정된 표준지공시지가 격차율을 참작하되, 인근지역 내 유사토지의 지가수준과 평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그 밖의 요인을 <표준지A>는 2.62, <표준지B>는 2.72로 결정함.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 (단가)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2,720,000	1.01754	1.00	0.98	2.62	7,106,369	7,110,000
2	3,127,000	1.01755	1.00	0.33	2.72	2,856,054	2,860,000
3	2,720,000	1.01754	1.00	0.34	2.62	2,465,475	2,470,000
4	2,720,000	1.01754	1.00	0.33	2.62	2,392,961	2,39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거래사례비교법

(1) 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방법임.

(2) 거래사례의 선정

대상과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있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서 물적 유사성이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선정함.

기호	소재지	토지	면적 (㎡)	용도지역	거래가액(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건물			토지단가(원/㎡)		
a	상월곡동 2*-***	대	418	2종 일주	4,235,000,000	2023.01.11	1991.08.28
		건물	438.22		10,131,580		
- 토지배분단가(거래후 건물 멸실된바, 토지만의 거래로 판단됨) $4,235,000,000 / 418 \approx 10,131,580 \text{원} / \text{㎡}$							

(3) 사정보정

상기 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바 사정보정치는 없음.(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시점수정

구 분	기 간	지가변동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거지역	2023.01.11. ~ 2024.10.14	2.097 (1.02097)

(5)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개별요인 비교

기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1	0.84	0.92	0.92	0.99	1.00	1.00	0.70
	가로조건(가로의 폭, 계통 및 연속성 등) 및 접근조건(상가와의 접근성 등), 환경조건(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함.						
2	0.95	0.95	0.95	0.33	1.00	1.00	0.28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및 접근조건(상가와의 접근성 등), 환경조건(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 획지조건(이용상황 등) 에서 열세함.						
3	0.84	0.94	0.92	0.33	1.00	1.00	0.24
	가로조건(가로의 폭, 계통 및 연속성 등) 및 접근조건(상가와의 접근성 등), 환경조건(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 획지조건(이용상황 등) 에서 열세함.						
4	0.84	0.92	0.92	0.33	1.00	1.00	0.23
	가로조건(가로의 폭, 계통 및 연속성 등) 및 접근조건(상가와의 접근성 등), 환경조건(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 획지조건(이용상황 등) 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기호	거래사례 단가(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10,131,580	1.00	1.02097	1.00	0.70	7,240,827	7,240,000
2	10,131,580	1.00	1.02097	1.00	0.28	2,896,331	2,900,000
3	10,131,580	1.00	1.02097	1.00	0.24	2,482,569	2,480,000
4	10,131,580	1.00	1.02097	1.00	0.23	2,379,129	2,380,000

4. 토지 평가액의 결정

(1) 시산가액의 조정

기호	시산가액(원/㎡)		결정단가 (원/㎡)	비고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1	7,110,000	7,240,000	7,110,000	
2	2,860,000	2,900,000	2,860,000	
3	2,470,000	2,480,000	2,470,000	
4	2,390,000	2,380,000	2,390,000	

(2)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지지하고 있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공법상의 제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

기호	면적(m ²)	적용단가(원/m ²)	평가액(원)	비고
1	178	7,110,000	1,265,580,000	
2	225	2,860,000	643,500,000	
3	76	2,470,000	187,720,000	
4	40	2,390,000	95,600,000	
합 계			2,192,400,000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8-176	잡종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8	178	7,110,000	1,265,580,000	
2	"	338-507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225	225	2,860,000	643,500,000	현황 "도로"
3	"	338-509	도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6	76	2,470,000	187,720,000	
4	"	338-514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40	40	2,390,000	95,600,000	현황 "도로"
합 계								₩2,192,400,0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소재 "상월곡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6호선, 상월곡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잡종지임.
- 기호2: 장방형 토지로서, 도로임.
- 기호3: 장방형 토지로서, 도로임.
- 기호4: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남동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 기호2~4: 본건이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 및 기호4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도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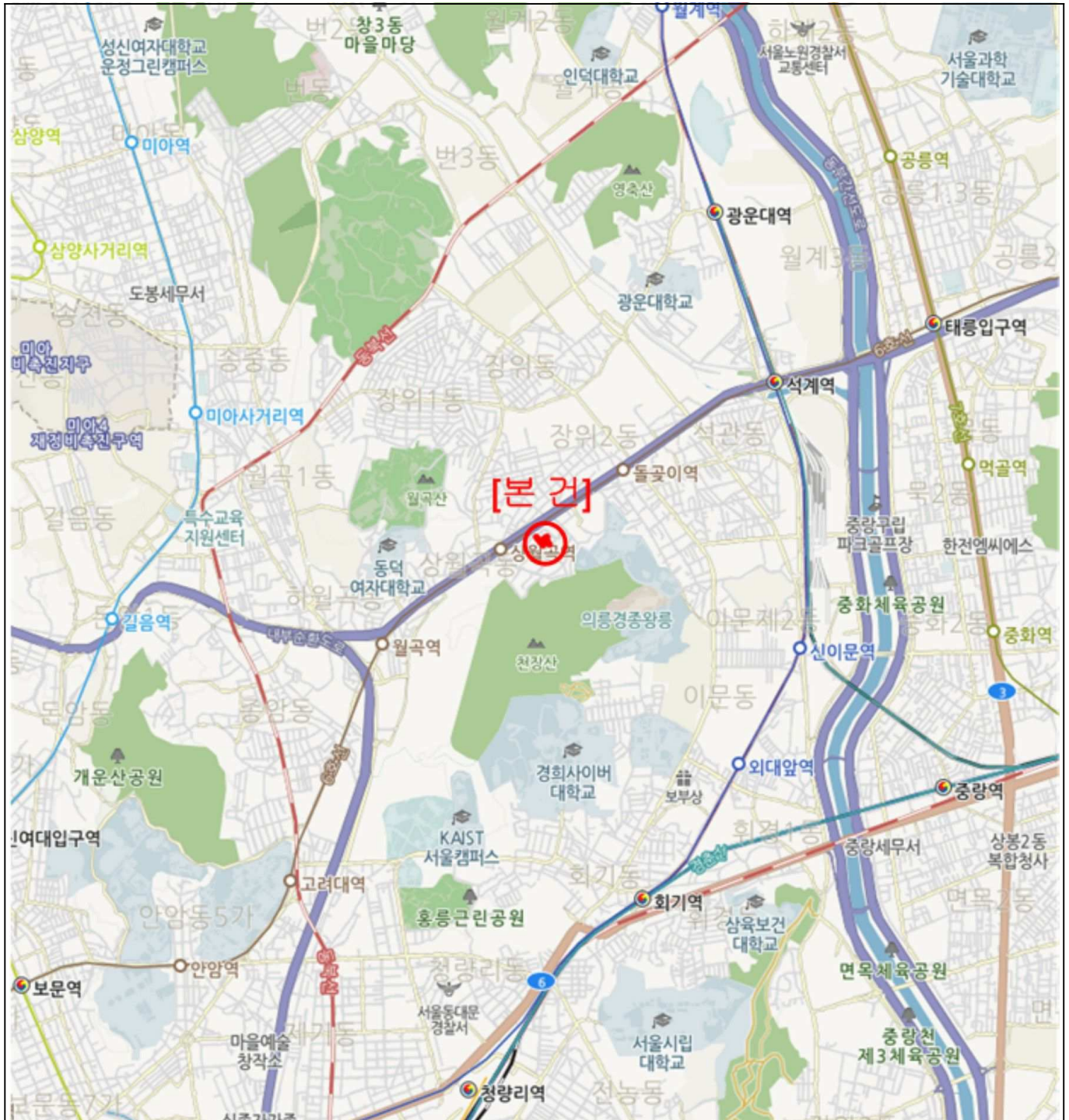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상세 내역은 미상임.

광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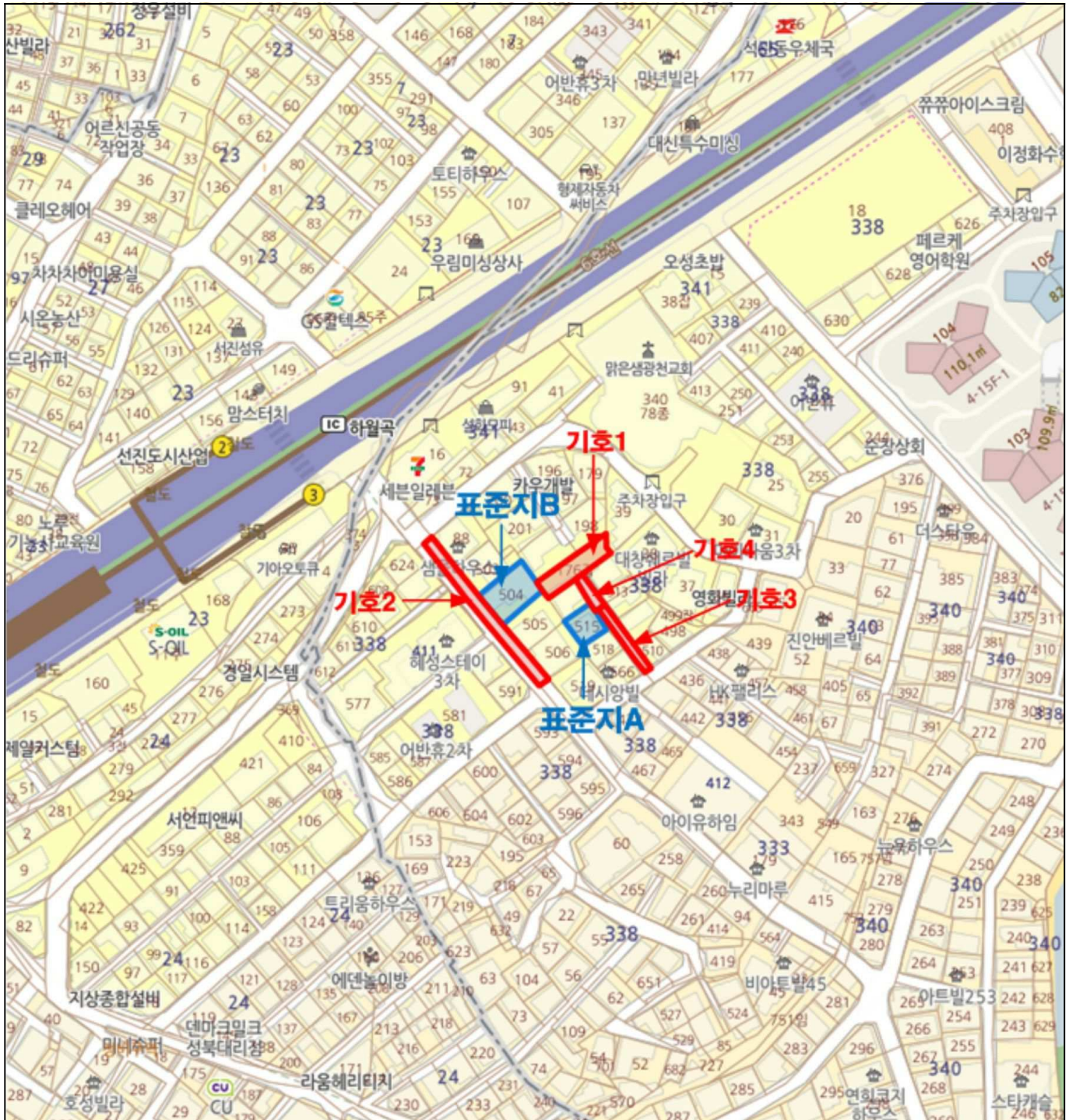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8-176 외
-----	-------------------------



위 치 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8-176 외



지 적 도



NO SCALE





[1]



[1]





[3]



[4]